채권거래통장약관

이 채권거래통장약관(이하 '약관'이라 한다)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 166 조 (장외거래)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 180 조 및 「금융투자업규정」에 따라국민은행(이하 '은행'이라 한다)과 거래처가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채권거래를 빠르고 틀림없이처리하는 한편, 서로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것이다.

은행은 이 약관을 영업점에 놓아 두고, 거래처는 영업시간중 언제든지 이 약관을 보거나 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.

제 1 조 [약관적용]

이 약관은 은행의 채권거래에 적용한다.

제 2 조 [채권 실물의 불발행과 통장에 의한 거래]

- ① 이 약관에 따라 채권를 거래함에 있어서는 증권예탁원앞 일괄예탁방식에 따라 채권실물은 발행되지 아니한다.
- ② 은행은 이 약관에 따른 최초의 채권거래시 거래처에게 통장을 발행하여 교부한다. 그 뒤의 채권거래시 거래처는 은행이 교부한 통장에 의하여야 하나, 판매거래에 있어서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장없이도 거래할 수 있다.

제 3 조 [최저 판매금액]

채권의 최저 판매금액은 거래 1 건당 동일종목 동일회차기준 액면금액 500 만원이상 100 만원 단위로 한다. 다만, 은행은 종목에 따라 최저 판매금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.

제 4 조 [환매대상 및 환매대금의 지급]

은행이 이 약관에 따라 거래처로부터 환매하는 채권은 은행이 판매한 채권에 한한다. 은행은 환매요청을 받은 당일에 거래처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

제 5 조 [환매단위]

환매는 채권의 액면금액 100 만원 단위로 가능하며, 일부금액 환매시 판매거래 1 건당 환매금액을 뺀 거래처의 채권 액면금액의 잔고가 500 만원 미만이 될 경우에는 해당 판매거래 1건 전액을 환매해야 한다.

제 6 조 [환매 제한기간]

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일로부터(당해일을 포함한다) 소급하여 직전 2 영업일 동안은 환매를 제한한다.

제 7 조 [매매수익률 호가고시]

은행은 채권 매매거래에 적용될 판매수익률 및 환매수익률 호가(이하 "매매수익률 호가"라 한다)를 영업개시전까지 고시해야 한다. 다만, 시장수익률이 변동하여 은행이 고시한 매매수익률 호가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는 새로운 매매수익률을 정하여 호가를 변경할 수 있다.

제 8 조 [결계계좌의 지정]

거래처는 이 약관에 의한 채권의 원리금 수령 등을 위해 최초 판매거래를 하기 이전에 은행에 결제계좌를 지정해야 한다.

제 9 조 [원리금 상환]

은행은 채권의 원리금 지급기일(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)에 증권예탁원으로부터 원리금을 수령하여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한 뒤 결제계좌에 입금한다. 원리금 지급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지급기일 후의 이자는 채권의 발행기관이 해당 채권의 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에 한정된다. 은행은 그 자신의 책임이 없는 한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증권예탁원의 지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 10 조 [양도 및 담보제공]

거래처가 이 약관에 따라 취득한 채권은 은행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. 다만, 환매제한기간 중에는 양도할 수 없다.

제 11 조 [면책]

채권 발행기관이 부도등의 사유로 원리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된 경우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제 12 조 [세금우대 요건]

- ① 상환기간이 1년이상인 채권을 1년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
- ② 제①항이외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「세금우대종합저축약관」을 준용함.

제 13 조 [관계법규의 준용]

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예금거래기본약관」, 관계법규, 일반적인 은행업무처리절차 등에 따른다.